



제429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진료시간 확대 >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71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야간 · 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진료시간 확대	3

I. 개요

1.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7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14.

(3) 회 부 일 : 2025. 8.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야간 진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시간이 아닌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야간 진료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하여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 2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진료시간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법 제34조의2제1항),

이와 같이 지정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법 제34조의2제2항).

□ 다만 현행법은 ‘야간’이 의미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개정안은 야간을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명시하여 해당 시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u>야간 또는 휴일에</u>	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 ----- ----- ----- ----- ----- <u>야간(오후 6시부터 오</u>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전 9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휴일----- ----- -----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재 보건복지부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이하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함에 있어 인정하는 진료시간(이하 “지정 진료시간”)을 평일 야간(18시~24시), 휴일 (09시~22시)로 규정하고 있음.¹⁾²⁾

- 즉, 지정 진료시간에 해당하는 야간·휴일 시간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만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비 지원³⁾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진료시간 외의 시간(예: 평일 24시~09시)에 진료를 할 경우 지정을 위한 배점 부여시간⁴⁾ 및 운영비 지원 대상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1) 보건복지부, 2025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2025. 1.

2) 보건복지부는 운영지침에서 이와 같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진료시간을 “모범운영시간”이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모범운영시간” 내에서 “최소운영시간” 이상 진료해야 함(보건복지부, 2025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2025. 1.).

운영시간	평일	토·일·공휴일(명절 포함)
최소운영시간	18~23시	10~18시
모범운영시간	18~24시	09~22시

3) 야간·휴일 운영시간에 따라 연간 최소 3,000만원 ~ 최대 7억 2,000만원 지원

4)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한 “참여기관 선정지표” 중 “사업계획의 적절성” 항목 배점에 ‘지정 진료시간에 해당하는 야간·휴일 의료서비스 제공시간’이 포함됨(보건복지부, 2025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2025. 1.). (* “참여기관 선정지표”는 시·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현재 전국 121개소의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됨
(2025. 7. 기준).

* 연도별 현황(개소): '21년(30) → '22년(31) → '23년(57) → '24년(101) → '25. 7.(121)

* 권역별 현황(개소): 서울(15), 부산(9), 대구(5), 인천(8), 광주(4), 대전(6), 울산(3), 세종(1),
경기(33), 강원(3), 충북(5), 충남(5), 전북(7), 전남(4), 경북(0), 경남(9), 제주(4) ('25. 7. 기준)

□ 개정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진료시간 중 평일 야간을 18시~09시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지정 진료시간(18시~24시)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24시~09시)이 지정 진료시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 이는 심야부터 이른 오전시간(24시~09시)의 소아 진료를 활성화 하여, 소아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 경증환자를 분산하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관한 논의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진료시간은 보건복지부가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정 진료시간의 확대는 법률의 개정 없이도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가능함.

□ 둘째,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지원은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진료시간 외에 발생하는 소아 진료 수요와 한정된 재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내원시간별 응급실 이용 현황([표 1])을 보면 18~09시 사이에 14세 이하 환자가 가장 많이 내원하는 시간은 18~21시(23.3%), 21~24시(20.5%) 순으로 나타나, 개정안이 확대하고자 하는 24~09시에 대한 소아 진료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음.⁵⁾

[표 1] 연간 전국 내원시간별 응급실 이용 현황(0~14세)

(단위: 건)

계	0-3시	3-6시	6-9시	9-18시	18-21시	21-24시
992,993	100,377	57,883	50,739	348,982	231,282	203,730
(100%)	(10.1%)	(5.8%)	(5.1%)	(35.1%)	(23.3%)	(20.5%)

자료: 2023 응급의료 통계연보(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2024. 10.)를 바탕으로 재작성

□ 셋째,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외에도 2025년부터 24시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대해 진료지원금 및 성과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사업⁶⁾을 실시하는 등 통상적인 진료시간 외의 소아 진료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따라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진료시간의 확대는 이와 같이 소아 진료 지원 강화를 위한 타 정책의 실시현황을 고려하여 정하여질 사항으로 보임.

□ 넷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하여 적용받고 있음.⁷⁾

- 야간·공휴 가산: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 시 기본 진찰료 30% 가산

- 심야 소아가산: 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 진료 시 기본 진찰료 200% 가산(요일 무관)

5) 다만 이는 응급실 이용 현황으로 경증 및 중증소아환자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주 이용환자로 추정되는 경증소아환자의 이용 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6)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센터 등)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과·뇌혈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집중하는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임. 현재 화상(5개소), 수지접합(8개소), 분만(12개소), 소아청소년과(3개소), 뇌혈관(2개소) 선정됨(2025. 6. 30. 기준).

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함.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간호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기타 의료관계 법령에서 ‘야간’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입법례가 없으며, 달빛어린이병원 외에도 의료기관별 사정에 맞게 야간·휴일 건강보험 수가 적용에 따른 외래진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한정된 소아의료 자원과 예산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료 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간대의 지원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문 의 처
02)6788-5509